

농촌지역의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사회지원체계

박 옥 임*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Elder Abuse and Social Support System in Rural Area

Park, Ok Im
Division of Social Welfa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ABSTRACT

Research method was a case study as narrative metho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round 21 sufferers of elder abuse in rural area and the researcher interviewed them directly. Conclusively, the majority of sufferers of elder abuse were physically very low in the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ad been bereaved with no spouse. The relations of abused parents and the adult children were much disagreed and divided as unrecovered. Their economic reliance and physical reliance were much overlapped and the majority of them were low educational background and low income level. In case of the abused old people, they had severe low self respect and melancholy, so they considered severely suicide so much as invaluable as their existing value. In spite of over 80.5 years old average, the abuse action had continued for 6 months to 50 years long and the intensity of the abuse was more strengthened. The majority of abused old people refused mostly the entranc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elders and also they desired to live in present living area and their own houses.

Key words: rural area, elderly abuse, risk factors, social support system

I. 서론

한국사회가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도 위
기경제상황에서 비전형적 가족이 급증하면서 가
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상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가족부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양가용

(Availability)인구 감소와 함께 노인부양 기능 또
한 약화되어(김유경 2004) 자기부양능력이 결여
된 노인들이 학대의 주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2008)에 따르면, 2007년 평균수명이 남
자 75.74세, 여자 82.36세, 전체 79.18세로서 UN
이 분류한 선진국 평균 76.1세를 상회하는 수준

이 연구는 2007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접수일: 2009년 7월 25일 채택일: 2009년 8월 18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Ok Im Tel: 82-61-750-3671 Fax: 82-61-750-3670

e-mail: parkok@sunchon.ac.kr

에 이르렀다. 2008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3%로 1998년 6.6%에 비해 3.7%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의 노령화는 2000년 노령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노령인구의 비율이 14.3%로 추정되고 2026년에는 20.8%로 상승하면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속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19.3%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며 그 중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율은 34.4%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08).

한국가족은 전통적 효 중심의 가족형태의 소멸과 함께 가족들 간의 갈등과 분열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이농현상의 심화과정에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와 노인 단독 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주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재결합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가 변화되고 있다(김태현 2006). 노인의 권위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점차 상실되어 가는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도시노인보다 농촌노인이 높은 노인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보고가 있다(Dimah & Dimah 2003; 이준상 2002). 이는 농촌지역의 노인학대가 도시지역보다 노출되기 어렵고 사회적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노인학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숨겨진 문제로서(Schiamborg & Gans 2000) 그 정확한 규모와 실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성인자녀인 아들, 딸, 며느리와 친지, 손자녀 등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가족이 행하는 학대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노인학대는 노인과 혈연관계인 자녀 및 이들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노인학대는 부양부담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양자녀로부터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김미혜

2004; 보건복지부 2007; 김미혜·권금주 2008).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송영민 2003)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 문제를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하여 외부로의 노출을 꺼리며 노인 스스로의 수치심과 가족구성원들의 체면, 자식을 범죄인으로 취급하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학대고발 이후의 더 큰 학대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학대 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서운 2000; 조애저 2000). 학대피해노인의 대부분은 학대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학대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숨기며, 그 가족들 역시 치료만 요구할 뿐 가족문제에 대한 접근해결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박재간 등 1996). Weith(1994)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의 보호자와의 관계와 보호수준의 약화, 그리고 보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학대로 보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준상 2002 재인용).

자녀들로부터 노인이 학대를 받는 원인으로는 노인 및 가해자녀의 개인적 요인, 사회구조 측면까지 다양한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한동희 1996; 서운 2000; 권중돈 2004; 나용선 2005; 김미혜 2007) 노인학대 발생요인을 단편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특성상 표본의 크기가 작고 자료수집방법에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었는데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율성이 낮아(방희명 2007),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노인학대 개입전략 개발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박봉길 2000).

게다가 농촌지역의 복지정책은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지역과 달리 주로 농업인 정책과 동일시함으로써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 사회적 관심이 농촌 복지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윤순덕·박공주 2006).

이 연구 목적은 학대노인들이 학대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극히 부족한 농촌의 현실에서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근거로 학대위험요인과 학대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지원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회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학대노인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등 다른 가족학대에 비해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이다. 그러다가 1975년 영국의 Baker의 논문에 노파 구타(granny battery) 문제가 언급되면서 처음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박광준 2004). 그러나 할머니 구타라는 용어는 할머니라는 감성적인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 때문에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여성노인에 국한되며 여러 가지 학대유형 가운데 신체적 학대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방희명 2007). 1980년대에 서구사회에서는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2002년에는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PEA)를 구축하였고 이와 함께 예방과 개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국제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김선희 등 2005).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노인학대 문제를 가정폭력의 일부로 다루어오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 1조 2항)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업무수행 지침에는 비의도적 방임 또는 방임적 학대도 포함시키고 있다. 노인학대는 광의로서 어떤 형태로든 노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행동과 비행동을 의미한다(Dimah 2001).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

리 자녀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문화권이므로 부양거부와 노인유기도 노인학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박광준 2004).

노인학대의 분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정신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경제적 착취(financial abuse), 가혹행위(exploitation), 유기(neglect), 방임(negligence)의 7가지로 나누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폭력행위를 수반한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처, 손상,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학대는 언어를 통하여 괴롭힘을 가하는 것으로 꾸짖거나 처벌이나 박탈의 위협을 가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학대는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상태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 심리적 불안감 조성이나 심리적 고립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착취는 노인 본인의 경제적 자산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방임학대는 노인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양을 게을리하거나 거절하는 것으로서 비의도적인 방임 또는 자기방임도 이에 포함된다.

대체로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가정내 노인학대(domestic elder abuse)와 시설노인학대(institution elder abuse)로 구분하는데(알란 켐프 2001),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학대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 성인자녀, 손자녀 등 보호제공자가 행하는 가정내 학대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2.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노인학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성격 및 정신과 신체상황, 그리고 가족의 경제상황, 상호관계의 질, 갈등, 부양스트레스, 지원체계 등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과 개인과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다(김미혜·권금주 2008).

노인학대는 대개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배우자 등 가족성원에 의해 일어난다. 2006년도 전국 노인학대에방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학대 가해자 중 아들(5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1.8%), 딸(10.4%) 순으로 조사되어(보건복지부 2007) 우리나라 노인학대는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위험요인은 학대받는 노인의 특성과 가해자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Kim 2003). 먼저, 학대받는 노인의 특성으로는 성(sex), 나이(age), 경제적·인지적·신체적 상태(financial, perceptive, physical conditions) 등을 들 수 있고,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부양스트레스와 힘든 역할수행, 배우자의 상실, 빈곤문제, 신체적인 장애와 알코올 문제, 가족구성원간의 감정적인 문제 등이 작용하고 있다(한동희 2004). 특히 가해자가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의존적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경제적 상황과 맞물린 부양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의 결핍과 약화에서 발생된다는 주장이 있다(Jordan 2001). 노인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실업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열악한 경제 상황이 노인부양 자체에 대한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인부양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한동희 1996). 즉 노인학대의 가해자인 성인자녀는 자신의 가족 부양과 노부모 부양 사이의 중간 세대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점진적으로 표면화 되고, 보호제공 욕구와 관련된 좌절이 분노를 자극하여 학대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알란 챔프 2001). 또한 학대 행위자의 실직이나 경제적 의존성, 피해 노인의 경제적 기여 상실 발생하게 되면 학대유발 요인이 가증될 가능성이 높다(권중돈 2007). 가해자의 경우 우울증의 경향과 음주벽 등이 가해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고, 학대노인과 가해자 간에 대화거의 없으며, 직업 등 자신의 일이 없는 사람일수록 노인학대 가해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광준 2004). 대부분의 학대 가해자들은 실

직, 실업상태에 있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동희 1996).

가해자의 배우자 유무도 학대위험 요인으로서, 2006년 노인학대 상담사업 현황보고서(2007)에 의하면 가해자 중 26.4%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어도 이혼,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 및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으나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노인은 이 사실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도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김미혜 2007). 노인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나용선(2005)의 연구에서는 학대노인과 가해자 각 6명씩을 대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가해상황, 피해상황, 상호작용 요인에 대한 현상이해를 도모하여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가족 상황적 요인으로 가족 내 학대역사, 폭력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가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배진희·정미순 2008), 추가해자가 자녀보다는 배우자인 경우, 과거 학대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피해노인이 여성인 경우 더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정서적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음주양상을 보일수록,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배우자나 자녀·손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을수록, 피해 노인이 여성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학대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과거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보다 자녀인 경우 노인을 방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인의 주관적 경제상태가 열악할수록,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양기대감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고와 역기능적인 타인과의 관

계가 그물처럼 얽혀 있어서 학대노인과 가해자녀는 공동의존관계가 되고,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설정이 어렵게 된다(박옥임 등 2008).

학대받는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서운 2004; 이연호 2003; 배진희·정미순 2007), 연령이 높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주·김태현 2000). 최근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인이 급증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의존적인 노인인구를 양산하므로 연령은 노인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대에 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일수록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박광준 2004).

Kosberg & Nahmiash(1996)는 노인학대를 의존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의존정도, 경제적 상태 및 문화변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신체적 질병,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 치매, 인지기능 장애, 경제적 의존 상태, 자아존중감으로 파악되는 의존성은 노인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Hickey & Douglas 1981; Laches & Pillermer 1995 권중돈 2004; 서운 2004).

3. 사회지원체계

사회지원체계는 학대받는 노인들의 위기에 대한 대처와 변화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고 건강유지에 필요한 완충 작용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대받는 노인은 학대받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경향이 있다(배진희·정미순 2007 재인용). 고립은 학대받는 노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나 위기를 주변의 도움이 전무한 상태에서 홀로 극복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써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능력을 제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개입이나 권위를 가지고 학대를 차단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를 배제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한은주와 김태현(2000)의 연구에서 보면, 친척·이웃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은 낮은 학대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노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학대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인 배우자나 자녀 등이 곤란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알란 캠프 2001). 학대받는 노인들은 자신의 학대사실을 주변에 노출하기를 꺼려하여 도움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노인학대를 지속시키고 이들을 더욱 사회에서 고립시키며,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면에서 노인학대를 유발시킨다(Rathbone-McCuan & Voyles 1982).

학대받는 노인이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끝까지 참는 경우는 62.8%, 무조건 피하는 경우는 7.4%로 상당수의 노인이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함께 맞대응 하는 경우는 24.5%,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4.3%, 기타가 1.1%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하게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 등으로 나타났다(조애저 2000).

노인복지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혜경 2006)에 의하면 이들이 인식하는 현행 노인학대 신고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합성은 낮은 편이고, 노인학대의 사회지원체계가 매우 미흡하며, 그 중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시설에의 접근성 부족을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복지시설 기관 미흡과 농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부재를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윤순덕·박광주 2006). 농촌지역 노인들은 도시지역 노인들보다 노인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학대유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학대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mah & Dimah 2003).

노인학대 문제는 학대받는 노인은 물론 학대 행위자인 다른 가족원 모두가 해결하기 힘든 가족문제가(김미혜 2007)내재되어 학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체계론적 관점의 사회지지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만 손상된 가족 간의 갈등과 관계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그동안 노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양적인 연구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방법은 인터뷰를 통한 효과적인

생애사적 기술의 질적 연구방법이다. 질적 연구를 통하여 양적조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노인학대 대상자들의 경험 세계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구술 내용을 분석한 후 체계화 하여, 양적연구에서는 다루어지기 힘든 주제에 접근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심층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심층면접은 과정에서 MP3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면접 전에 먼저 대상자에게 녹음과 녹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자료수집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2007년 5월에서 6월까지 학대받는 농촌노인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내용과 피해자 및 가해자 생활상태, 건강상태, ADL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한 후, 2차 조사를 2008년 3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최고의 고령화율 지역인 전라남도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 21명이다.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도·농통합도시인 순천, 여수, 광양, 나주 4개시와 강진, 장흥, 화순,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무안, 함평 등 9개 군으로 총 13개 시·군이다.

IV. 연구결과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연구대상은 농촌지역 학대노인 21명이다. 성별은 남성노인 2명(사례 13, 사례 15)과, 여성노인 19명으로 여성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80.5세로서 상당히 고령자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은 4명뿐이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인 노인은 17명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유무를 살펴보면 학대노인 5명이 배우자가 있으나 그 중 1명은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11). 다른 한명은 부인과 연락 두절된 상태(사례 15)에 있으며, 또 다른 한명은 일본에 있는 남편과 50년 넘게 별거하고 있어(사례 12) 배우자가

있어도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또 한 부부는 부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 남편이 전적으로 수발과 가사책임을 책임지고 있다(사례 7). 나머지 한명은 참전유공자인 남편이 국가연금을 혼자서 다 소비하고 부인에게는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사례 19).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정서적인 유대 및 협력관계를 맺는 부부는 1명에 불과하다(사례 7).

학대기간을 보면, 최소 6개월 이상(사례 7)부터, 심지어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1).

가구형태는 독거노인이 9명이며 손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2명이다. 그 중 1명은 손자와 동거하지만 손자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21). 다른 1명은 장애를 가진 손자와 동거하는데 이 손자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 1).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남편의 연금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1명(사례 2)을 제외한 대부분이 저소득층 또는 수급권자로서 매우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

2. 노인학대의 실태

1) 노인학대의 주학대자와 학대수준

농촌이라는 지역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삶의 흔적이 잔존하기 때문에 학대의 주행위자는 전부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등 가족구성원이었다.

다음은 아들(사례 2, 8, 10, 13, 14, 15, 16, 17, 18, 20), 아들·며느리(사례 4, 5, 6, 9, 12, 19, 21), 며느리(사례 7), 사위(사례 3), 손자(사례 1), 배우자(사례 11)가 주학대자가 된 사례이다.

학대수준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좋지 않은 감정이나 갈등, 분노의 처리 수준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수준의 폭력이었다. 또한 며느리, 사위, 손자에 의해서도 배우자 및 아들과 유사한 수준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나도 모르게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자식이 호적에 세 명이나 올려있지 않겠어... 지금도

Table 1. General data for the subject of study

Case	Age	Sex	Spouse	Educa-tion	Children	Family Type	Living Children	ADL & Health	Income	Public Support	Abuse Actor	Abuse Period (yr)
1	95	F	no	prim.	2S 4D	w/disabled grandchild	×	ADL very bad	subsidy	○	grandson (disabled)	35 yrs more
2	81	F	no	prim.	3S 3D	sole	×	a little ADL	pension, pocket money	×	son	21 yrs more
3	80	F	no	none	1D	sole	×	a little poss, under cancer	subsidy	○	son in law	18 yrs more
4	95	F	no	none	2S 3D	w/son	○	bad, fracture	pocket money	×	son, daughter in law	30 yrs more
5	79	F	no	none	1S 4D	sole	×	bad	merit man (medical 1st gr.)	×	son, daughter in law	5 yrs more
6	87	F	no	none	1S 4D	sole	×	bad	pocket money	×	son, daughter in law	3 yrs more
7	73	F	yes	prim.	1S 1D	elder couple	×	very bad	subsidy	○	daughter in law	6 months more
8	83	F	no	none	1S 4D	sole	×	bad	little	○	son (ex-convict)	5 yrs more
9	73	F	no	none	3S 2D	sole	○	a little poss	normal	×	son (ex-convict), daughter in law,	2 yrs more
10	75	F	no	none	2S 1D	w/second son	○	very bad	little	○	second son (heart disease)	6 yrs more
11	72	F	yes	none	3S 3D	elder couple	×	a little poss	normal	×	husband	51 yrs more
12	85	F	SP	none	4S 1D	w/son	○	bad	little	×	youngest son(university, divorced), daughter in law	2 yrs more
13	81	M	no	prim.	1S 3D	w/son	○	bad	little	×	support by parents, elder supporting-no	2 yrs more
14	71	F	no	prim.	2S 2D	sole	×	very bad	subsidy	○	eldest son(bereaved, high school)	3 yrs more
15	70	M	SP	none	1S 2D	sole	×	very bad	subsidy	○	eldest son	1 yr more
16	76	F	no	prim.	3S 4D	w/first son	○	ADL	subsidy	○	son(jobless, high school)	5 yrs more
17	85	F	no	none	2S 2D	w/first son	○	bad	NR	×	son(divorced, middle school)	7 yrs more
18	80	F	no	prim.	1S	w/first son	○	poss	subsidy	○	eldest son(disabled, alcoholic)	10 yrs more
19	81	F	yes	prim.	3S 1D	w/first son	×	bad, glucose urine	NR	×	son, daughter in law	5 yrs more
20	85	F	no	prim.	3S	sole	×	a little bad	NR	×	all sons exterior (contact cut off)	10 yrs more
21	84	F	no	none	6S 1D	w/grand son	○	very bad	NR	×	son, daughter in law	5 yrs more

Legend: F(female), M(male), S(son), D(daughter), prim.(primary), w/(with),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NR(none recipient of basic life), gr.(grade), SP(separation), sole(living alone)

남남처럼 살아... 말이 영감이지... 징그러워... 자기가 바람피우고 그러니까 항상 나를 의심하고(의처증) 심지어는 사냥총으로 내 가슴에 대고 협박해... 꼭 죽는 줄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싸버렸지 뭐야(오줌)... 이제 51년이 넘는 세월이야..."(사례 11). "어렸을 때부터 영리해서 온 식구들이지만 이빠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술만 먹으면 밤이고 낮이고 전화에다 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한 시간 이상씩 하고 악을 써... 왜 자기를 낳았냐고 그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실했는데, 5.18때 열흘 동안 행방불명이었는데 지금은 직업도 없고 술에 젖어 살아... 내 한 달 생활비(남편 사망 후 연금)의 3분의 1이상은 애가 가져가... 돈 주면 며칠간은 조용해... 살 것 같애... 돈 떨어지면 또 포악을 해..."(사례 2). "팔자가 사나워... 첫 남편을 사별하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큰 아들이 십년 전 지네들이 안 맞아 이혼하드만 집으로 기어 들어와 살고 있어... 웬수가 따로 없어... 방 얻어 나갈테니 방 얻을 값을 주라는 거야... 내가 원호대상자로 보훈처에서 매월 30여 만원이 나오는데 귀신같이 그날 와서 통장 내놓으라는 거야... 안 내놓고 내가 버틸 재간이 있나... 지 아버지 목숨과 바꾼 피 같은 돈인데... 그걸 한입에 털어버려..."(사례 5). "망치로 쳐죽이니... 목을 밟아 죽여버리겠다느니... 언젠가는 메주를 쓰고 있는데 절구대를 들고 쫓오는 거야... 술에 젖어 애미인 나한테 이년 저년 하며 달라들어... 팔자 고쳐서(재혼) 낳은 자식은 없지만 지금 남편 자식들이 내 속에서 낳은 놈보다 나한테 더 잘해..."(사례 8). "젊었을 때 지 과실로 교도소에 간 것을 돈 쥐서 빼내 왔더니 지금도 술 먹으면 칼을 들이대며 돈 내놓으라고 지랄해... 어떤 때는 이웃집이나 마을 회관으로 피해버려... 거기까지 쫓아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죽어야 이 꼴 안보지..."(사례 9). "제발 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 동네에서는 부모를 때리는 천하에 나쁜 놈이라고들 해... 술만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없는 살림 다 부셔놔버려... 지가 잘 살 때는 소식도 없드만... 6년 전에 직장 잃고 내려와서는 지옥이 따로 없어..."(사례 10). "아들과 같이

살아도 남남이여... 집에 있어도 본체만체 해... 내 속이 너무 시끄러워... 지가 나한테 빌붙어 살면서..."(사례 13). "둘이서 잘 살드만... 지 마누라 죽고 내 집에 들어와 한 방을 쓰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 내놓으라며 가슴을 팍 치드만 내 갈비뼈가 뭘 힘이 있겠어... 바스라졌지..."(사례 14). "나한테 나오는 교통비 큰 아들이 다 가져가 버려... 마누라 복이 없는 놈이 자식 복인들 있겠어..."(사례 15). "지가 운수업을 할 때 돈 한 푼도 안 내놓은 놈이 나한테 돈 뜯어갈라고 방을 잠가 버리고 꼬집고 밀치고 그래... 오죽하면 여동생이 오빠를 고소한다고 할까..."(사례 16). "지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 하려고 때리고 인감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 한 때 폭력 때문에 고소했다가 다시는 그런 일 안하겠다고 짹짹 빌걸래 취하해줬는데 괜히 그랬어..."(사례 17). "같이 살면 뭐해... 나도 지하고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자식이 지 애미를 때리고 밀치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테도 그렇게 하지 못해... 병원이 제일 편했어..."(사례 18). "영감이 나를 안보고만 데서 얼굴도 모르는 자식을 호적에 올리드만... 지금은 자식도 똑같이 나를 본체만체 해... 아파도 말할 데가 없어..."(사례 20). "남편도 일찍 죽고 큰 놈은 자살하고 둘째하고 여섯째도 죽어버려.. 자식이라고는 지 하나뿐인데, 시아버지 재산을 지 혼자 다 가질라고 발광을 해... 오죽하면 내가 손자집에 얹혀 살겠어... 내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해도 와보지도 않아... 그게 자식이여?"(사례 21). "큰 자식이 직장을 놓아버리자 며느리랑 매일 귀가 아프게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 합세하여 나가라... 꼴 보기 싫다... 망구가 죽지도 않는다... 하면서 내 먹살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드라니까... 허리도 삐끗하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지금도 어떤 때는 아파... 오죽하면 막내 딸이 법적 고소를 한다 그러고 지랑 나랑 죽자고 하더라니깐... 내가 말렸지...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야..."(사례 6). "내가 당뇨로 몸이 붓고 꿈꾸 거려도 들은 체 만 체 하드만... 돈을 안 주면 물불 안가리고 달려들어... 갈비뼈에 금도 갔었어... 영감 유공자 수당을 가져가 버려... 남편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못살아..."

(사례 19). “우리 집 양반이 리어커꾼으로 평생 모은 돈을 사위 자식이 한 입에 털어갈라고 내 앞에서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고 난리를 피대… 그래서 영감 장사 치르고 부족돈 300만 원을 주니깐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징그럽네… 다시는 안보고 싶은데 돈 떨어지면 또 와.. 국가에서 매달 주는 돈 조금씩 모아 놓으면 냄새 맡고 며칠간 잘하다가 돈 안주면 또 그래… 지 이빠서 주는 돈(기초생활수급권자 보조금)이 아니야… 우리 딸 때문에 쥐…”(사례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낸지 석달도 되지 않아… 글썽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교회가지 말랬더니 내 쪽진 머리채를 확 잡드랑게… 내가 뭘 힘이 있겠어… 나둥그러졌지… 그 뒤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지금은 분가하여 소식도 전혀 몰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박복하여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셋째아들의 자식인 손자(지적 장애2급, 41세)까지도 여차하면 돈 달라고 이 늙은 나를 벽에 밀치고 목도 조르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그래…돈 안주면 온통 집을 다 뒤져서 썩대발을 만들어 놓고 집 나가버려…”(사례 1).

2) 학대 노인의 학대경험으로 인한 심리상태

학대받는 노인들은 삶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고,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니까 산다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극단적인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2, 6) 학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불안, 공포, 분노, 억울함, 신세 한탄 등의 다양한 감정을 가지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측은감(사례 10, 11, 19), 의존성과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수치심과 어리석음(사례 13) 학대 행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사례 7), 증오(사례 9) 등이 교차되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심리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런 놈을 데려가지 않고 놔두는지…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보게 나를 데려가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가 하루 이

틀이었었어?... 돌아가신 영감은 한 번도 나에게 큰소리 낸 적 없었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이 꼴 저 꼴 안보지… 지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열심히 공부하랄 때 안하드만 어쩔 것이여… 불쌍한 놈이지… 그래도 지가 내 앞에 죽는 것 보다는 나오니깐… 약도 지어주고 김치도 담가줘…”(사례 2). “불쌍한 딸한테도 내가 못할 것이야… 지 처지나 내 처지나 너무 한탄스러워… 우리 둘이 같이 죽어버리자… 그러기도 했어…”(사례 6). “내가 못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깐 자식들까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너무 서러워… 그래도 남편밖에 없어…”(사례 7). “집에서는 천하에 목숨 놈이 밖에 가서는 낮가죽도 두껍게 남들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남 같으면 진즉 감옥에 쳐 넣었지… 아무도 이속을 몰라… 그것이 사람이여? 그럴 때도 있어…”(사례 9). “자식 없을 때가 천국이었지… 술 안 먹으면 말짱해… 술이 웬수지… 지도 병(간경화, 신부전증, 심장병) 있었는데 그러지… 오죽하겠어… 다 돈 없는 죄여…”(사례 10). “항상 불안해… 내 앞으로 된 이 집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애… 어떻게 벌여 장만한 집인데 본인이 한 푼이나 보냈나… 지 손에 넘어가면 나는 길바닥에 나왔을 텐데… 지는 바람 피우면서 나를 쥐 잡듯이 해… 이 세상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인근에 언니라도 있으니까… 젊었을 때 안 해본 일 없이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키웠는데 이제는 자식도 필요 없어…”(사례 11). “부인이 죽고 나서 너무 허망하여 있던 차에 아들, 며느리가 들어와 산다니깐 어찌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근데 그게 지네들 속셈이 따로 있었던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사례 13).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내가 어찌 알았겠어… 남 부끄럽고 쟁피하고 그래서 다른 자식들한테는 모른 척해… 그런데 그 자식들도 아는 것 같은데도 또 모른 척 하는 것이 야속해…”(사례 19)

3. 노인학대의 위험요인

1) 학대 노인의 특성요인

조사대상자인 피학대노인들은 1명(사례 18)을

제외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의 경우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도 장애를 가진 손자녀를 정부 보조금으로 부양하고 있었으며 ADL도 어려운 상태였다. 사례 2 또한 양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인하여 굽은 허리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다. 사례 7은 중풍, 관절염, 요통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사례 10은 시각장애인 1급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집안환경이 매우 비위생적이므로 시설입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사례 12는 거동이 힘들고, 사례 14는 신장 투석 중이었으며, 사례 15는 청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중풍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으며, 2006년 추석 이후 외상상태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이다. 사례 19는 당뇨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사례 20은 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보살피지 않았다.

“죽을 나이가 되니 귀도 잘 안들려… 보청기를 끼고 있어… 그것도 딸이 해준거야… 딸이 제일이드라고… 겨우 세끼 밥 끓여먹고 사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이럴거야… 허리야 어차피 굽은거… 아프지만 앉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어떤 때는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어… 우리 손자가 있는게 내가 살아… 지도 나한테 기대고 살겠지만…”(사례 1). “젊었을 때부터 허리가 굽어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결국 양 무릎에 인공관절을 끼워넣어… 그래도 영감 연금으로 사니깐 괜찮아… 다른 자식들은 효자야… 술 먹을때 천하에 불효자인데 술만 안먹으면 착한 놈이야… 인정도 많지… 형제들 중에는 제일 따뜻해… 본성은 악하진 않은니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사례 2). “옛말이 딱 맞아… 사위 자식 개자식이라는데… 틀림이 없어… 지하고 나하고 무슨 업보인지 모르겠네… 내 딸 생각하고 돈을 주지… 지가 이빠서 주는 거 아냐… 지도 살기가 팍팍하니까 그러겠지… 내가 암수술 했은게 언제 죽을지 나도 몰라… 그래도 나 죽으면 제사상에 묻은 때 놓겠지… 그러니까 참지… 어쩔 것이

여…”(사례 3).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개들이 사람이대? 내가 넘어져서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하니깐 참는 게지… 화장실도 잘못 가고 그래… 그래도 딸이 있으니깐 다행이지 뭐… 어떤 때는 고소하고 싶어도 그래도 아들이 병원비를 부담하므로 그러지도 못해… 욕만 해대지, 때리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야…”(사례 4). “내가 온갖 병치레를 다하고 있어”(사례 7). “거동조차 못해… 우리 아들이 그럴 만도 하지… 지가 번 돈을 딸 손에 놔부렸거든… 딸이 꼭 갚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지… 그런데다 내가 내 몸을 잘 못쓰니깐 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지… 아들이 어떤 험한 말을 해도 내가 참아야 해…”(사례 8).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 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도 일도 못해… 지가 살기 힘들니깐 나한테 왔는데 이제는 자식이고 뭐고 소용없어… 제발 떨어져 살아… 안 봤으면 좋겠어… 지도 몸이 아픈게 나한테 화풀이 했겠지만…”(사례 10). “내가 이렇게 사는 줄은 아무도 몰라… 알아서도 안 돼…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기적이어… 50년이 넘어… 그래도 딸이 있으니깐 내가 피신했지… 나야 남이니깐 행패를 부려도 딸한테까지는 지 자식인디 행패를 부리겠어”(사례 11). “나는 신장투석을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몸도 너무 힘들어”(사례 12). “아이고 나는 귀도 안들린데, 중풍으로 쓰러져서 몸 한쪽이 내 맘대로 안돼”(사례 15). “얼어죽을 당뇨가 걸렸는디, 합병증으로 눈도 잘 안보이고 걷는 것도 힘들당께.”(사례 19).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아들들 소용없어… 자식들 있으면 뭐해… 모른 체하는데… 얼굴 본지도 오래됐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이웃사촌이 낫더라니깐… 거동도 잘 못하는데… 맘 써주니깐 고맙지… 그래도 자식들은 보고 싶은데… 내 마음을 몰라…”(사례 20)

2) 학대 가해자의 특성요인

① 경제적 상태

대다수의 학대 가해자는 빈곤하며, 사례 2를 제외하고 학력이 낮았다. 낮은 학력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가정생활 영위조차도 어려운데다 사회활동도 극히 제한을 받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부모가 받는 연금이나 정부 보조금, 수당 등 경제적 갈취와 함께 부모 부양에 있어 형제간에 합의한 자신의 분담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며, 유산 문제로 가족 간에 극심한 분열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나라가 나를 먹여 살려 주고 있어… 지 앞 가림도 못하는데… 좋은 세상이야…”(사례 1). “그래도 영감이 최고야… 영감 죽고 연금으로 나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사니깐… 지금도 지가 아버지 턱을 보면서도 나한테 그래…”(사례 2). “많이 못 배웠는데 밥벌이하기가 쉽진 않겠지 만 그런다고…”(사례 4). “나도 못 배워서 이려고 있는데, 술값을 아껴도 뭐할텐데 노상 취해있으니… 돈벌이가 될 턱이 없지…”(사례 5). “중학교 졸업하고 가난하다고 부인이 집 나가 버렸는데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겠어… 재혼한들 뽀족한 수가 있을라고…”(사례 6). “난 집에 든 병이라더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병까지 얻어 수술을 했지만 큰 차도가 없어…”(사례 10). “몸 다친 대가로 받은 돈을 며느리도 야물지를 못해 그 돈을(2천만 원) 장인에게 뜯겼으니 내가 보청기가 필요하다 하니(2백만 원) 자기네들도 해줄 수가 없네…”(사례 12). “전혀 돈 벌려는 생각은 안하면서 아버지 유산을 넘보고 독차지하려고만 하니…”(사례 20).

학대노인 절반이상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사례 1, 3, 5, 6, 7, 8, 10, 14, 15, 16, 18),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례 2는 남편과 사별 후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여 생계의 위험은 없으나, 셋째 아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어머니로부터 돈을 갈취해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남편 사망 시 부의금 조차도 사위가 아들 노릇한다면 전부 가져가서 장례비용도 빚으로 남게 된 경우도 있다(사례 3). 사례 6은 딸들이 용돈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 용돈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는 경우 며느리가 전화하여 험한 욕설을 해낸다고 하였다. 딸들이 어머니의 부양비로 월 5만원씩을 내서 방을 얻어주

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들은 그마저 싫다고 하며 학대하고 있으며, 시설입소를 권유하였으나 그 또한 반대하고 있다. 사례 14와 18은 비슷한 경우로, 예전에 가해자인 아들이 나가겠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주었는데도 나가지 않자 학대노인이 자진해서 나가기 위해 이전에 주었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돈이 없다면서 학대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 사례 15는 청각장애가 있으나 아들이 일용하여 월 11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사례 19는 며느리가 참전유공자 수당을 갈취해가고 있으며, 사례 20은 4년 전 수급권자 신청을 했을 때 남편이 외도하여 낳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수급권자 신청을 하여도 외도해서 낳은 자녀들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여 수급권자보다 더욱 빈곤한 상태이다. 사례 21은 아들들이 병원비로 10만원씩 모아서 4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논의 이후 네 아들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다섯째 아들만이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셋째 아들은 병원비 부담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명의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② 알코올중독·정신질환

학대 가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고 교육수준도 낮았는데다가 경제활동도 극히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는 건강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알코올로 인한 사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고처리비용 또한 가중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성숙되지 못하고 가족을 화풀이나 불만,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생각하여 노인학대가 지속되고, 치료자체도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학대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부모 사랑도 못 받은 손자가 정신도 오락가락하니 속이 상해… 나 죽으면 어떻게 할런지 몰라…”(사례 1).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다

망가져버렸어… 그 놈의 술 때문에… 술로 직장도 잃고… 사고를 쳐서 물어준 돈만 해도 집 몇 채 값은 됐어… 지금은 얼굴도 변해버려 어떤 때는 자식이라도 무서움중이 들어… 술만 안 먹으면 말짱하거든…”(사례 2). “매일 술독에 빠져있으니 무슨 일이 될라고…”(사례 8). “술만 먹으면 미친놈 같애… 보이는 게 없나봐… 발광해…”(사례 9). “지 몸이 성치 못하니깐 술을 먹었지만 그게 더 한 것이여… 할 짓 못할 짓 다해…”(사례 10). “지가 지은 죄가 많으니깐(외도하여 다른 여자에게 3명의 자녀를 낳아 내 호적에 입적시킴)… 온 정신에는 차마 나한테 못하는지,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려…”(사례 11). “지 사지가 성치 못하니(지체장애) 술로 세월을 보내…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더 날뛰니 말할 수도 없고… 미쳐버리는 것 같애…”(사례 18).

③ 가족 간의 관계

대부분의 노인학대 가족은 학대가해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며, 역으로 첨예화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반복·순환 관계를 보이고 있다(사례 3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발견). 노인학대의 순환체계에서 노인학대는 가족 내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물론, 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관련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네 사촌 조카는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인데도 관심조차도 없고 고향에 내려오지도 않고… 남남도 이렇게는 안해… 한 다리가 만 리야…”(사례 1). “지 형제들은 불쌍하다고도 하고 밋다고도 하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아…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 어쩌다가 만나도 마음에 없는 말들만 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는 속 없는 놈이라고만 해…”(사례 2). “서로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하고… 세상에 법으로 가자고도 해… 형제가 할 짓이여…”(사례 4).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할 말 못 할 말 가리지 않고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 나라도 싫제…”(사례 6). “내가 자식이 많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하겠어…

나를 무시하고 알잡아 보니깐 그러지…”(사례 7). “형이 그러니깐 동생들은 말도 못 꺼내고… 혹시나 내가 지네들 집으로 갈까봐 벌벌 떨어… 팔자를 고쳤다고(재혼) 자식들이 나 몰라라해… 오히려 내가 안 낳은 자식이 더 나아…”(사례 8). “잘 사는 자식과 못 사는 자식은 상대를 안할려고 하고 명절에도 오지도 않아…”(사례 9). “배다른 자식들끼리 뭐가 가깝겠어… 다들 못 본체해… 애비가 애비 같아야지…”(사례 11). “지네들(딸 셋) 살기도 팍팍한데 나한테 까지 신경을 못 쓸거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사례 13). “그래도 딸들은 맘들을 써줘… 가끔 오기도 하고 전화도 해…”(사례 15). “내 앞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나마 남은 자식들이 없는 재산 욕심 부리니… 누가 좋아하겠어…”(사례 17). “자식 복이 없어… 지네들 어렸을 때는 서로 우애하라고 가르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애…”(사례 19). “남편의 외도로 이복 자식이 있어… 서로 몰라라 하면서 얼굴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 이웃 사촌이 딱 맞는 말이여…”(사례 20). “내가 오래 사니 내 앞에 자식이 세 명이나 죽었는데 속없는 놈이 재산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니 형제인들 정이 있을라고… 나 같애도…”(사례 21).

4. 학대노인의 대응 및 사회지원체계

학대 노인의 절반 정도는 참고, 견딜 수 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박복함과 죄책감으로 학대하는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사례 1, 2, 3, 4, 7, 10, 16, 19, 21). 가까운 이웃, 형제, 자녀에 알리거나 경로당, 마을회관, 병원에 피신하는 소극적인 대응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사례 5, 6, 8, 9, 13, 14, 18, 20), 특히 사례 9는 아들이 동네에서는 유지행세를 하는 체면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학대를 참고 있다고 하였다. 사례 20은 자녀들의 방임 때문에 수급권자도 되지 못하며, 이웃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겨우 겨우 연명하여 살고 있다. 고소한 경우(사례 11, 12, 17)도 있는데,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왔다가 가정 문제로 여겨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경찰 고소로 인해서 학대가 더욱 심해져 괜히 고소했다는 후회가 든 경우(사례

11)와 이웃이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사이만 나빠져 오히려 이웃 간의 관계가 불편해져 버렸고 (사례 12), 고소하여 가해자의 용서를 받고 취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고소취하에 따른 후회막심의 심정을 토로한 경우도 있었다(사례 17).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권유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독립성의 상실과 친숙한 거주 환경을 떠난다는 두려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강한욕구로 인하여 입소를 꺼려하고 있다(사례 10, 13).

“신고는 무슨 신고, 세상 다 산 사람인데…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내 팔자에… 내 업보 이지…”(사례 1). “지도 사람인데 설마하니 나를 겁 줄려고 그러지… 죽이기가 하겠어… 믿고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해… 눈치야 채겠지만… 그러니까 더한 지도 몰라…”(사례 2). “아들 없이 사는 나를 무시해서 그래… 동네에서도 그래… 신고해도 뽀족한 수가 있었어…”(사례 3). “어디다 알려지나 이웃에 말하면 더 큰일 나… 참고 살아야지… 누가 저 화상을 이길 거야…”(사례 4). “한 번은 교회 장로에게 얘기했더니, 더 큰 소리로 집안 장독을 다 깨버렸어… 더 이상은 못해…”(사례 5). “우리 집 문제인데 누가 남들이 나서서 해주겠어… 자기네들 살기도 바쁘지…”(사례 6). “지가 제정신(가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지나가는 바람이여…”(사례 7). “딸집에 갔는데 그것도 불편해… 못 있었는데… 사위 눈치도 보이고…”(사례 8). “나를 죽이겠다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마을회관으로 도망갔거든… 회관맡고는 어디 갈데가 있어야지. 근디 거기까지 쫓아와… 더 쟁피하드라고…”(사례 9). “시설에 들어가 봤자 내 앞으로 돈이 안 나오는데… 왜 가…클고 내집이 있는 디 어딜가…”(사례 10). “인근에 사는 언니 집으로 피신하고 멀리 있는 딸네 집으로도 가… 한 번은 경찰서에 신고했거든… 그냥 왔다만 가버리드라고… 더 난리를 쳐…경찰들도 와서

자식을 욕하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간다…”(사례 11). “난리를 피우니깐 이웃이 신고했거든… 도로아미타불이야… 그때뿐이야…”(사례 12). “김새가 이상하면 경로당에 가버려…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랑 살아야제”(사례 13). “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사례 14). “고소는 무슨 고소? 돈이 없어서 그러지 뭐… 부모 때린 그런 자식을 둔 내 죄지…”(폭행에 의한 상해를 심하게 입었으며 심지어 노인을 집안에 감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친 상처를 산에서 다쳤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자식을 감싸고 있음, 딸은 고소를 강력히 주장하였음.)(사례 16). “이웃에 피신한 적도 있었고 경찰에 고소했더니 아들이 용서를 구했어…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지… 그 때 뿐이고 소용없드라고… 그 때 고소 취하한 것 후회해…”(사례 17). “행패를 부릴 때 참을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막상 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웠지…”(사례 18). “다른 자식들도 몰라라 하는데… 남이 얼마나 도와주겠어… 결국 남인데…”(사례 19). “그래도 이웃이 눈감지 않고 도와주더구만… 참 고마운 일이지…”(사례 20). “불쌍하게 죽은 자식들은(3명 사망) 말이 없는 데,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놈이 이러니… 누가 나서 주겠어…”(사례 21).

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노인의 학대가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사회복지원체계에 대해 탐구하였다. 농촌지역의 노인학대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학대 노인에 대한 심층 면접의 결과를 요약하면 노인학대의 피해자들 대다수가 신체적 일상생활 수행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사별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대부분으로 학대받는 부모와 그들의 성인자녀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의존도와 신체적 의존도가 중복된 경우가 많았고 저학력·저소득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학대받는 노인의 경우 극도로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겨 자살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학대받는 노인의 경우 평균연령이 80.5세의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가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으며 학대의 강도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 학대 주가해자는 아들과 며느리, 사위, 손자, 배우자로 나타났다. 가장 가까운 가족원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경험으로 인하여 불안, 공포, 분노, 억울함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측은감이 공존하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무기력에 대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노인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전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학대피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웃, 형제, 가해자 이외의 가족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피신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대받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노인복지시설인 생활시설 입소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거주지역과 주거에서의 생활을 희망하고 있었다.

학대 노인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가족환경에서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사회복지기관, 시설, 행정 등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학대 노인에게 가해자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은 학대 노인의 고립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으나 학대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데는 유효하지 못하다. 학대노인은 자신의 학대 사실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고,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선호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원체제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노인학대의 위험요인과 사회복지체계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농촌지역 학대 노인은 가장 친밀한 가족으로부터(배우자, 성인자녀, 손자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는 상실을 경험한 세대로서 학대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무기력함과 죄책감 등으로 무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학대 수준과 학대 빈도, 학대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학대가 상습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노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대를 재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가해자의 처벌과 상담치료가 병행되는 사회지원체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대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노인학대관련 서비스는 학대 노인 중심의 가정 복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험 사례나 향후 잠재 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복귀는 또 다른 학대를 유발하거나 방치하게 되므로 긴급 격리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시설에 신속하게 입소되도록 적극 협조되어야 하며 단순한 시설 보호 차원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와 함께 정신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대 노인 가정은 그 자체가 역기능적 체계로서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위협과 심리적 안정을 극도로 위협하고 있지만 학대노인들은 시설 입소보다 자신의 거주공간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향유할 수 있는 자원 확보와 성인 자녀, 친족, 친지, 이웃들의 사적 사회지원체제와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기관, 행정 등의 공적인 사회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대 노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을 누릴 수 있는 가족정책이 개발·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대부분의 농촌 지역 학대 노인들은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 요청이나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긴급 구호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접근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체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의 홍보, 교육의 활성화 등이 농촌지역에까지는 접근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노인학대 예방과 개입의 필요성이 절

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로 인하여 경각심을 높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인 농촌 지역의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의 연계 구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 등과 같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가칭)노인학대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특별법에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관한 미흡한 제도적 보완인 노인학대 보고접수체계의 개선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공공 교육의 의무화, 지역사회 내의 노인학대 관련 법 집행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과의 긴밀한 연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2)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권중돈(2004)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19.
 권중돈(2007) 가족체계 관점에서의 노인학대의 이해와 해결. 제2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기념세미나 자료집,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49-58.
 김미혜(2007) 가족은 왜 노인을 학대하는가, 제 2회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세미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7-29.
 김미혜 등 노인학대연구회(2004)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상담센터전문위원회.
 김미혜·권금주(2008) 며느리에 의한 노인학대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3), 403-424.
 김선희 등(2005) 노인학대 전문상담. 한국가족복지학회·시그마프레스, 23-29.
 김유경(2004) 가족변화에 따른 부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91, 51-68.
 김태현(2006) 일반농촌의 인구와 가족의 특성과 변화, 한국가족관계학회/한국농촌사회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3-10.
 나용선(2005) 노인학대 개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노인학대 가해 및 피해상황 관련요인 분석사업적 원조전략.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광준(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학현사 331-363.

박봉길(2000) 노인학대 인식도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업 원조전략. 부산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박옥임 등(2008)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박재간 등(1996)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눔출판사 27-28.
 방희명(2007)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7년도(사)한국거버넌스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집, 1-17.
 배진희·정미순(2007) 노인학대 영향요인의 성별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36, 35-62.
 배진희·정미순(2008) 노인이 인식한 가해자 특성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3), 443-457.
 보건복지부(2007) 2006 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www.mw.go.kr
 서 윤(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 29-71.
 서 윤(2004)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보건과복지 7, 61-81.
 송영민(2003) 피학대 노인의 의존성에 관한 생애사적 역할, 페미니즘 연구 3, 85-120.
 알란 캠프(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눔출판 381-414.
 양영자(2009) 노인보양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애사적 재구성. 한국노년학 29(1), 1-20.
 윤순덕·박공주(2006)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델파이 연구 농촌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한국가족관계학회·한국농촌사회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59-74.
 이연호(2003) 노인학대 위험요인 및 특성이 학대로 인한 피해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2), 359-372.
 이준상(2002)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8(3), 521-543.
 조애저(2000) 노부모 학대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43, 49-61.
 조애저·김승권·김유경(1999)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08) 사회통계, 2007년 생명표. www.kostat.go.kr
 한동희(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동희(2004) 노인학대상담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안. 까리따스노인학대상담센터, 노인학대상담실례집 3-23 .
 한은주·김태현(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애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20(2), 71-89.
 한혜경(2006) 노인복지종사자의 노인학대 신고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적합성 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한국노년학 26(4), 767-783.
 Bergeron LR(2002) Family Preservation: An Unidentified Approach in Elder Abuse Protection,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3(5/6), 547-556.

- Dimah KP(2001) Patterns of Elder Abuse and Neglect in an Illinois Elder Abuse and Neglect Provider Agency: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3(1), 27-44.
- Dimah KP & Dimah A(2003) Elder Abuse and Neglect Among Rural and Urban Wom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5(1), 75-93.
- Gray-Vickrey P(2001) Protecting the Older Adults, *Nursing Management* 32(10), 37-40.
- Harris TL & Molock SB(2000) Cultural Orientati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in Suicide Ideation and Depression, *Suicide & Life Threatening Behavior* 30, 341-353.
- Hickey T & Douglas R L(1981) Neglect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s: Professionals' Perspectives and Case Experience *The Gerontologist* 21(2), 171-176.
- Jordan IC(2001) Elder Abuse and Domestic Violence: Overlapping Issues and Legal Remedi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Law*, 15(2), 147-156.
- Kim S(2003) The Patterns and Predictors of Korean Social Workers' Intervention Methods in Elder Abuse and Neglect. Ph.D.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Kosberg L & Mahmiash D(1996)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Milieus of Abuse and Neglect. In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Older Persons: Strategies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Edited by Lorin A. Baumhover & S. Colleen Beall, Baltimore, Maryland: Health Professions Press, Inc. 31-50.
- Laches MS & Pillemer K(1995)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437-443.
- Laches MS & Williams CS & O'Brien S & Pillemer KA & Charlson ME(1998). The Mortality of Elder Mistreatment. *JAMA* 280(5), 428-432.
- Lee M & Kolomer RS(2005) Caregiver Burden, Dementia, and Elder Abuse in South Korea,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7(1), 61-74.
- Rathebone-McCuan E & Voyles B (1982) Case Detection of Abused Elderly Par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2), 189-192.
- Schiamburg LB & Gans D(2000) Elder Abuse by Adult Children: An Applied Ec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ntextual Risk Factors and the Intergenerational Character of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ealth Development* 50(4), 329-359.